

POLICY 정책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

관련 항목:	COF-EA, COF-RA, COH-EA, EEB-RA, GBB-RA, IGO-RA, IGP-RA, JFA, JFA-RA, JGA, JGB-RA, JPC-RA, KGA-RA
책임 사무실:	수석 학업 책임관(Chief Academic Officer) 수석 행정 책임관(Chief Operating Officer) 학교 협력 및 행정 부교육감(Deputy Superintendent of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구에서의 알코올, 담배, 기타 마약 남용 예방 (Preventing Alcohol, Tobacco, and Other Drug Abuse i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A.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가 담배와 마약, 알코올과 약물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여 교육, 배움, 노동이 안전한 환경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B. 고려점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Board)는 약물류, 다른 중독성 화학약품, 약물이 학생의 신체, 사회 정서적, 지적 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의 알코올, 담배, 기타 약물 남용이 사회 전체에 주는 피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학부모/후견인과 커뮤니티 그룹들과 함께, 학생들의 신체적, 사회 정서적, 학업적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식, 의사결정 능력, 건강을 육성하는 방법과 전략을 제공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고용주로서 Board Policy GAA, *Positive Work Environment in a Self-Renewing Organization* 에서 정한 바와 교육위원회의 관심인 알코올, 담배, 약물이 없는 직업환경 유지를 이루어 나갈 것을 단언합니다.

MCPS 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법적 및 불법적 약물에 관한 예방과 교육을 제공하고 도움, 중재, 연계, 상담을 제공하며 필요할 경우, 알코올, 담배, 기타 약물에 관한 법, 교육위원회 정책, MCPS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집행합니다.

C. 입장

MCPS 의 교직원과 학생은 연방, 주, 카운티 법을 준수해야 하며 행동, 행위, 교습을 통해 알코올, 담배, 기타 약물을 권장 또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행동, 행위, 교습을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MCPS 소유지에서의 알코올, 담배 및 약물의 소유, 사용, 배부 금지를 유지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서의 MCPS 소유지란 MCPS 가 사용하거나 소유한 모든 땅과 버스와 MCPS 자동차, 학생이 참여하는 MCPS 의 모든 시설과 공간을 포함한 모든 학교와 교육구 그리고 기타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 정책은 MCPS 고용인의 MCPS 소유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시간 외에 불법적인 행동을 금하기 위한 의도로 작성된 정책은 아닙니다.

1. 의사소통과 교육

- a) MCPS 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후견인에게 알코올, 담배 약물이 없는 안전한 교습, 학습,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위원회 정책, MCPS 규정, 관련법을 알립니다.
- b) MCPS 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학생을 위한 종합적, 연구에 기반을 둔 건강 보건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적용합니다. 교과과정은 이 약물과 다른 화학약품과 약이 학생의 신체, 사회 정서적, 지적 능력 발달에 미치는 부분적 영향과 사회 전체에의 알코올, 담배, 기타 약물 남용 피해가 되는 영향 요소를 가르칩니다.
- c) MCPS 는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을 도우며 각 학생이 다른 학생의 알코올, 담배, 기타 약물 사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2. 식별 및 도움

- a) MCPS 는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알코올, 담배 및 약물 남용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 (1) 학생을 위한 도움은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학교 카운슬링 서비스, 학생도움 기관, 대체 프로그램, 공공 또는 개인 치료 프로그램, 기타 커뮤니티 서비스와 도움을 주는 적절한 기관으로의 인계를 포함합니다.
 - (2) 직원에 대한 도움은 Board Policy GAA, *Positive Work Environment in a Self-Renewing Organization*에 따라 교직원 도움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됩니다.
- b) MCPS 는 직원이 염려하는 미성년 학생의 학부모/후견인과의 의사 소통 절차를 만들고 비밀을 최대한 유지합니다.

3. 커뮤니티 리소스 활용

MCPS 는 지역사회 전체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알코올과 약물의 소유, 사용, 배부의 금지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MCPS 는 알코올과 여러 약물남용에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건강보건 제공기관, 카운티, 주, 연방정부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돕고 권장합니다.

4. 집행

- a) MCPS 는 알코올, 담배, 약물이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적절한 행동을 취합니다:
- (1) MCPS 소유지에서의 담배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MCPS 소유지에서 학생의 담배와 담배 관련 물품 소지를 금지하는 법집행 조치
 - (2) MCPS 소유지에의 알코올과 약물 반입을 금지하는 법집행 조치
 - (3) 무기와 폭력 또는 폭력적 협박 문제, 경우에 따라 알코올과 약물의 소지, 사용, 제공을 다루는 안전 조치 제공
 - (4) 예방, 교육, 치료, 법집행을 포함한 알코올, 약물 남용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지방, 주, 연방정부 기관과의 협력

- b) MCPS 교직원의 장소, 징계처분의 근거구성에 무관한 즉시 해고를 포함한 알코올 또는 약물과 관련된 불법적 활동. 징계처분은 범죄의 유죄 선고를 필요치 않습니다.
 - c) 학생이 교육위원회 정책 Board Policy JFA, *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와 MCPS Regulation JFA-RA, *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에 명시된 활동에 참여한 경우의 징계처분 기준과 절차를 책정합니다.
5. Maryland 법 규정에 따라, 교육감은 학생 또는 학교 소유지에 있는 사람으로 opioid 과다복용이라 여겨질 경우, 비상 응급조치를 제공하는 절차를 책정해야 합니다.
- a) 학교 간호사, 학교 보건 교사, 또는 교육감이나 대리가 명시한 학교 교직원인 학생이나 학교 소유지에 있는 사람 중 날록손(Naloxone)이나 다른 종류의 과다복용 해독제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b) 교육감은 다음 절차를 개발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 (1) 학교에서 비상 상황에 사용하도록 날록손(Naloxone)이나 다른 종류의 과다복용 해독제를 유지 보관한다.
 - (2) 학생 부모/후견인에게 각 학년도 초에 이와같은 절차를 알린다.

D. 바라는 결과

1. MCPS 에서의 배우고 가르치며 일하기 안전한 환경은 알코올, 담배와 기타 약물이 없는 환경입니다.
2. 규정의 개발과 적용은 교직원과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며 연방정부, 주, 지방 법과 교육위원회 정책, MCPS 규정의 집행을 적용합니다.
3. 학생과 교직원이 알코올, 담배, 약물 남용의 나쁜 영향에서 벗어나 이에 관한 지식, 의사결정 능력, 건강의 증진 방법과 전략에 대해 교육받고 성장합니다.

E. 검토와 보고

1.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의 사생활을 보호하며 이 규정과 이 규정 적용 절차를 개발합니다.

2. MCPS 는 이 정책의 적용을 학생이 관련된 알코올과 약물의 심각한 사건의 연간 학생 데이터를 통하여 공공과 교육위원회에 알립니다.
3. 교직원과 관련된 사건은 Office of the Chief Operating 이 관리하고 모니터 합니다.
4. 이 정책은 위원회의 정책 평가 절차에 따라 검열되었습니다.

관련 자료:

Omnibus Transportation Employee Testing Act, Public Law 102-143, codified at 49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 40; Annotated Code of Maryland, Education Article (ED) §4-124, §7-411-413, §7-426.5, §7-428, §26-103; Annotated Code of Maryland, Criminal Law Article, §5-627;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13A.02.04, 13A08.01.08, Related MCPS Documents: Drugs and Alcohol and the Testing Rules: Handbook for Supervisors, Employee Assistance Program; MCPS K-12 Health Education Curriculum Framework; Just Cause Standards for Bus Attendants and Bus Operator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High School Athletic Handbook; Student-Parent Athletic Participation Information

정책 역사: 결의안에 따른 채택 번호 370-90, 1990 년 6 월 12 일; 결의안에 따른 수정 번호 704-90, 1990 년 11 월 13 일; 결의안에 따른 수정 번호 328-13, 2013 년 6 월 13 일; 결의안에 따른 수정 번호 316-17, 2017 년 6 월 26 일.

정책 역사: 결의안에 따른 채택 번호 332-70, 1970 년 6 월 9 일; 결의안에 따른 수정 번호 294-73, 1973 년 4 월 30 일; 재확인 수정 번호 652-83, 1983 년 7 월 25 일; 개정안 수정 번호 709-83, 1983 년 8 월 9 일; 결의안에 따른 수정 번호 333-86, 1986 년 6 월 12 일 결의안 번호 458-86, 1986 년 8 월 12 일, 승인된 결의안 번호 517-86, 1986 년 9 월 22 일; 승인된 결의안 번호 370-90, 1990 년 6 월 12 일.